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57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김예지·김선교·박덕흠

김소희 • 임종득 • 정성국

서미화 · 김상훈 · 우재준

서천호 · 조경태 · 박준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체육계 인권침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의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체육 분 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 로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여 재정의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의3 중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을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 요·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나.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적인 폭력 행위
- 다.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 제5호(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6호(성추행,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	11의3
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	
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	
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u>인권</u>	<u>ਲ</u> ੋ
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u>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u>	<u>나에 해당하는</u>
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	
위를 말한다.	
<u><신 설></u>	<u>가. 상해, 폭행, 감금, 협박,</u>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
	<u>욕, 공갈, 강요·강제적인</u>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
	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
	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u>수반하는 행위</u>
<u><신 설></u>	<u>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u>
	<u>인 폭력 행위</u>
<u><신 설></u>	다. 「학교체육진흥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신 설>

12. (생략)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 ② ~ ⑤ (생 략)

의	학습	권을	박탈하거나
침ㅎ	해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u>를</u> 침]해하	는 행	위	
12. (현행	라 같	음)		
레12조((체육	지도계	사의	자 7	벽취소
등) (1				
				· 기, 제5	
<u>수상</u>	해에	해당	하는	행위-	를 한
<u>경우</u>	로 힌	정한	다) '	및 제6	호(성
추행,	성폭	두행에	해도	당하는	행위
를 한	한 경:	우로	한정	<u>한다)</u> -	
			.		
1. ~	8. (현행고	가 같 [.]	음)	

② ~ ⑤ (현행과 같음)